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6. 23.
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. 5. 19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3. 5. 25.

다. 상정일자: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(2023. 6. 16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주차관리과장 양선주】

## 가. 제안이유

거주자 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인상과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 관련 조항,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다자녀 감면 대상 확대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나. 주요내용

-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요금에 대한 적용금지 상향 단서조항 신설 및 요금인상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고려한 부칙 신설 (안 제2조 및 부칙 제1조)
  -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관련조항 신설(안 제4조의5)
  - 제4조의5 조항 신설로 인한 조례상 약칭사항 정비(안 제5조)

-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상 다자녀 감면대상 확대 실시(안 별표1 제17호)

#### 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
- 「주차장법」 제8조의2(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), 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
-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4조(노상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), 제5조(노외 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), 제7조의2(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)
-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6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, 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, 제14조의3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), 제17조의2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), 제25조(장애인전용주차 구획의 설치기준 등)

- 입법예고: 2023. 4. 13. ~ 5. 3. (제출된 의견 없음)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인상과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 관련 조항,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다자녀 감면대상 확대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가. 주요내용

- (안 제2조 및 부칙 제1조)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에 대

한 적용급지 상향 단서조항 신설 및 요금인상에 대한 홍보 및 계도  
기간을 고려한 부칙 신설

- (안 제4조의5)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관련 조항 신설
- (안 제5조)제4조의 5조항 신서로 인한 조례상 약칭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임.
- (안 별표1 제17호)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상 다자녀 감면 대상 확대 실시하는 내용임.

#### 나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(노상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)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 8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,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다자녀 감면 대상을 확대 실시하고 관내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요금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

## [별표 1] 관계 법령

### 「주차장법」

#### 제6조(주차장설비기준 등)

- ① 주차장의 구조·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(이하 “경형자동차”라 한다) 및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(이하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라 한다)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)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6. 1. 19., 2017. 10. 24., 2019. 12. 24.>
- ②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·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18., 2019. 12. 24.>
-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24.>
- 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·군관리계획과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,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4., 2017. 10. 24., 2019. 12. 24.>[전문개정 2010. 3. 22.]

###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

#### 제4조(노상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)

-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 2. 6., 2021. 8. 27.>
  1.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.
  2.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3.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(沿道: 옆길)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  4. 종단경사도(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

-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가.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,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
- 나.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
5. 고속도로,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6.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7.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8.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가.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: 한 면 이상
- 나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: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
-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0. 10. 29.]